

미국법상 해외 소송 사건을 위한 Discovery(자료 요청 및 제출)가 가능하다.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이 두려워 미국 회사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 회사들은 미국법원이 아닌 해외에 있는 법원 혹은 국제 중재재판소를 분쟁의 해결 장소로 택한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식의 discovery (자료 요청 및 제출)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식의 discovery 를 피하려는 외국 회사들은 미국법원이 해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위하여 discovery 를 허용하는 미국법에 관하여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동 미국법은 28 U.S.C. § 1782 로서 “Assistance to Foreign and International Tribunals and to Litigants Before Such Tribunals” 라는 명칭을 가진다. 동 법령은 1948 년에 제정되었으며 미국 연방법원에서 해외소송과 관련된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목적과 미국법원에게도 외국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의 보조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두개의 목적을 지닌다. 동 법령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지방의 지방법원은 개인이 증언, 진술 혹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동 지시는 공식적인 혐의가 있기 전에 진행되는 형사 조사를 포함한 해외 혹은 국제 재판소의 소송에 쓰이기 위함이다. 동 지시는 해외 혹은 국제 재판소가 송부한 letter rogatory 혹은 요청이 있거나 이해당사자인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 내려질 수 있다. 미국 지방법원은 법원이 임명한 사람 앞으로 증언, 진술 혹은 자료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2004 년에 미국 대법원은 *Intel Corp. v. Advanced Micro Devices, Inc.*, 542 U.S. 241 (2004)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1782 조에 관한 주요 판결문이 되었다. 연방 대법원이 1782 조에 관한 판결을 내린 유일한 사건이다. AMD 는 Intel 을 상대로 독점 금지의 고소장을 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에 제출하여 Intel 이 유럽 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MD 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782 조를 기반으로 discovery 를 요청하였다. 지방법원은 1782 조가 요청된 discovery 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번복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였으며 1782 조 관련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사안들을 해결하였다.

*Intel* 대법원은 1782 조 관련 다음의 판결을 내렸다: (1) 요청 혹은 신청이 이뤄진 지방에 거주하는 개인으로부터 discovery 를 요청할 있음; (2) discovery 는 해외 재판소의 소송에 쓰이기 위함; (3) 신청인은 해외 재판소, 국제 재판소 혹은 이해당사자이어야 함. 대법원은 1782 조는 “foreign discoverability” 를 요구사항으로 두지 않으며 “해외 혹은 국제 재판” 이 법원과 유사한 기관 혹은 행정 소송을 포함한다고 판결하였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더라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혹은 법원의 검토가 있을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또한 지방법원이 1782 조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립하였다:

(1) 자료를 요청할 대상자가 해외 재판의 당사자인지의 여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대상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명백히 필요한 것처럼 1782 조의 보조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 (2) 해외 재판소의 성향,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미국 연방법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해외에 있는 정부 혹은 법원이 회답을 할지의 여부; (3) 1782 조의 요청이 해외 증거자료 수집 제한사항 혹은 외국, 미국의 정책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그리고 (4) 요청이 지나치게 침해적이거나 과도한지의 여부.

*Intel* 판결문 이후 많은 소송 당사자들은 1782 조를 이용하였고 그동안 대법원이 열거한 재량권에 관한 다양한 판결문들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이슈 중 하나는 법령의 “해외 혹은 국제 재판소” 라는 문구가 중재재판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다.